



질병관리본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감염병환자등 사망 신고 안내 요청

1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관련입니다.
2.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, '감염병 발생 신고서'와 '감염병환자등 사망(검안) 신고서'를 모두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며, 감염병 발생을 신고한 후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'감염병환자등 사망(검안) 신고서'를 추가로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.
3. 이에, 귀 협회 회원들이 감염병환자등의 사망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. 2020년도 감염병 관리사업지침 1부. 끝.

질병관리본부장



수신자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병원협회장

보건연구사 **백수진** 보건연구관 **출장** 감염병총괄과장 **이동한** 전결 2020. 6. 3.

협조자

시행 감염병총괄과-1890 (2020. 6. 3.)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감염병총괄과 / <http://cdc.go.kr>

전화번호 043-719-7112 팩스번호 043-719-7139 / bdpalm2@korea.kr / 대국민 공개